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자료 제공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개선은 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통하여 전국적인 회수·재활용체계가 구축된 윤활유 용기 등을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로 전환하고,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신 구조문을 비교해 본다.

- 편집자 주 -

## 주요 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정비 및 명확화(안 제10조제1항 개정)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으로 전환된 살충제 용기('09.12)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조문 정비를 통하여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조·수입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를 명확히 함  
나. 의료용 일회용 주사기를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제외(안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 신설)

○ 일회용 주사기의 경우 대부분 병원에서 의료폐기물로 처리 중으로 제품 제조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중부담 문제 해소

다. 플라스틱제품에 관한 자발적 협약의 세부 이행방법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제10조 제2항 바목 개정)

○ 현재 환경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중인 자발적 협약의 세부 이행방법 등을 고시로 정하여 명확히 함

라. 폐기물부담금 이의신청 및 청구기간 명시(안 제13조의 2 신설)

○ 현재 환경부 예규에 규정된 폐기물부담금에 대한 이의 신청 청구 및 그 기간을 법령으로 상향  
마. 폐기물부담금 대상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으로 전환(안 제18조 제1호 카목, 제8호, 제9호 신설)

- 자발적 협약을 통하여 전국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갖춘 유탄유 용기, 양식용 부자를 생산 자책임재활용제도 품목으로 전환
- 바. 폐기물부담금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업무의 권한 위임(제48조제2항10의2 신설)
  - 폐기물부담금 납부고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임
- 사. 전자담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 마련(안 별표2 개정)
  - 지방세법 개정(시행일 : '10.7.5)으로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가 부과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 근거 마련
  - 아. 중소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에 대한 부담금 경감(안 별표2 비고 5호 신설)
    -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매출액 200억 미만 업체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12년 분 폐기물부담금까지 50% 감면
  - 자. 폐기물부담금대상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환에 따른 재활용기준 비용 산정(안 별표6)
    - 유탄유 용기, 양식용 부자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과 관련된 재활용기준 비용 산정(자발적 협약 비용 준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제10조제1항제6호의 “가목”과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다목”을 삭제한다.

가. 별표1의2에 따른 부과대상 업종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 및 그 포장재

나. 별표1의2이외의 업종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의 포장재

제10조 제2항제3호 마목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에 속하는 1회용 주사기

제10조 제2항제3호 바목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발적협약의 이행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 2(폐기물부담금 이의신청 등) 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조제1호의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한한다)

8. 양식용 부자(「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

제48조제2항에 10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보

별표2의 5.담배의 요율 및 금액 기준란 중 “20개비 당 7원”을 “20개비(전자담배의 경우 카트리지) 당 7원”으로 하고, 비교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제4호와 별도로 폐기물부담금의 50%를 감면한다.

별표4 중 “11.합성수지재질의 윤활유용기 제조업 및 수입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합성수지재질의 윤활유용기를 사용하는 윤활유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	---	--

별표6 중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7.양식용부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류,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 윤활유

7.양식용부자	양식용부자	627원/kg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담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 적용례) 별표2에 따른 전자담배의 부과요율은 2010년 7월 5일 이후 국내에서 제조되었거나 수입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 경과조치) 별표2 비교5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2012년분 폐기물부담금까지만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

현행	개정안
<p>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 대상 품목)</p> <p>①(생략)</p> <p>1. 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및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p> <p>2.~6.(생략)</p> <p>가. 별표 1의2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가 제조한 제품 및 그 포장재</p> <p>나. 별표 1의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가 제조한 제품의 포장재</p> <p>다. 도·소매업자가 수입한 제품 및 그 포장재</p> <p>②(생략)</p> <p>1.~3.(생략)</p> <p>가.~마.(생략)</p> <p>1)~7)(생략)</p> <p>〈신설〉</p> <p>바. 환경부장관과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관하여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방법을 정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한다)가 제조한 제품 및 그 포장재〈신설〉</p> <p>〈신설〉</p>	<p>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 대상 품목)</p> <p>①(현행과 같음)</p> <p>1.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p> <p>2.~6.(현행과 같음)</p> <p>가. 별표 1의2에 따른 부과대상 업종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 및 그 포장재</p> <p>나. 별표 1의2 이외의 업종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의 포장재</p> <p>〈삭제〉</p> <p>②(현행과 같음)</p> <p>1.~3.(현행과 같음)</p> <p>가.~마.(현행과 같음)</p> <p>1)~7)(현행과 같음)</p> <p>8)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에 속하는 1회용 주사기</p> <p>바. _____</p> <p>(이 경우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p> <p>제13조의2(폐기물부담금 이의신청 등) 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p> <p>1.(생략)</p> <p>가.~차.(생략)</p> <p>〈신설〉</p> <p>2.~7.(생략)</p> <p>8. 그 밖에 생산자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재활용하려는 제품·포장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품·포장재</p> <p>〈신설〉</p>	<p>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p> <p>1.(현행과 같음)</p> <p>가.~차.(현행과 같음)</p> <p>카.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한한다)</p> <p>2.~7.(현행과 같음)</p> <p>8. 양식용 부자(「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p> <p>9. 그 밖에 생산자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재활용하려는 제품·포장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품·포장재</p>
<p>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②.(생략)</p> <p>1.~10.(생략)</p> <p>10의2.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보</p> <p>11.~19.(생략)</p>	<p>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②.(현행과 같음)</p> <p>1.~10.(현행과 같음)</p> <p>10의2.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보</p> <p>11.~19.(현행과 같음)</p>